



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환경부 자료 제공

## 1. 의결주문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유망수출산업인 화장품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한시적 포장규제 완화

## 3. 주요내용

가. 종합제품 내 화장품류 제품 항목 삭제(안 시행령 제7조제2호사목)

화장품류 제품의 단위제품과 종합제품의 구분을 없애고, 모든 화장품류 제품에 대해 단위제품의 포장공간비율 적용

##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호사목 후단 중 “1차식품, 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제과류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류, 세제류, 신변잡화류”를 “1차식품, 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제과류, 건강기능식품, 세제류, 신변잡화류”로 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화장품류 제품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이 령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유효기간) 제7조제2호사목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 ☐

신·구조문 대비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포장의 재질·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)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"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지 켜야 하는 제품</p> <p>가. ~ 바. (생 략)</p> <p>사. 종합제품(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. 이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 도구나 그 구성품, 소량(30그램 또 는 30밀리리터 이하)의 샘플용 비매품·증정품 및 설명 서, 규격서, 메모카드와 같은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보지 아니한다): 1차식품, 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제과류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류, 세제류, 신 변잡화류</p> <p>3. (생 략)</p>	<p>제7조(포장의 재질·방법 등에 관한 기준 준수 대상제품)</p> <p>_____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_____</p> <p>가. ~ 바. (현행과 같음)</p> <p>사.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1차식품, 가공식품, 음료, 주류, 제과류, 건강기능식품, 세제류, 신변잡화류-- _____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

**KOPA NEWS 신청**

(사)한국포장협회에서는 매월 15일 온라인 뉴스레터

‘KOPA NEWS’ 를 제작, 발송합니다.

신청은 이메일로 해주시면 됩니다.

편집실 : (02)2026-8655

E-mail : kopac@chollian.net